

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 내용

page	구분	현 행	개 정	비고
제1장 사업 개요				
p.3	3. 사업 주요내용	<p>나. 사업 대상</p> <p>1) 대상 기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원급,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 <추가> (이하 '시범의료기관'이라 함)과 약국,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(이하 '시범약국'이라 함) -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-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- 「지역보건법」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 - 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- 「약사법」 제91조에 따른 한국 희귀·필수의약품센터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 <p>2) ~ 3) <생략></p>	<p>나. 사업 대상</p> <p>1) 대상 기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<u>의원급·병원급</u> 의료기관 및 <u>보건의료원·보건소·보건지소</u>(이하 '시범의료기관'이라 함)과 약국, 한국희귀·필수의약품센터(이하 '시범약국'이라 함) -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-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- 「지역보건법」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 - 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- 「약사법」 제91조에 따른 한국 희귀·필수의약품센터 - 「<u>지역보건법</u>」 제10조에 따른 보건소,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*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</u></p> <p>2) ~ 3) <현행과 동일></p>	대 상 기 관 추가